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며,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사업소로 신설하여
종전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기획 사무를 관장토록하고,

-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도시국 뉴타운개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국에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소로 분리되어 신설되는 “교통정보센터”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위해 기존 건설
교통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2호
의결 년월일	2007. 10. 25 (제139회)

제안년월일 : 2007. 10. 2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 중에서 분리되어 사업소로 신설되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하도록 변경 조정함. (안 제3조제2항제4호)

□ 참고사항 :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내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환경수도국”을 “환경수도국, 사업소 중 교통정보 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3. (생략)</p> <p>4.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국, 건설교통국, <u>환경수도국</u> 소관에 관한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3. (현행과 같음)</p> <p>4. ----- -----<u>환경수도국, 사업소</u> <u>중 교통정보센터</u>-----</p>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내역

종 전		조 정		조 정 내 역
보좌 기관 (3)	공보실 공보실 음부즈만	보좌 기관 (3)	공보실 공보실 음부즈만	○ 현행
총무국 (4)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총무국 (4)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 현행
기획 재정국 (4)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기획 재정국 (4)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 현행
경제 문화국 (6)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경제 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 현행
주민생활 지원국 (5)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주민생활 지원국 (5)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 현행
도시국 (5)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공사과 시설공사과	도시국 (6)	도시계획과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건축공사과 시설공사과	○ 부서신설(도시균형개발과) ○ 부서명칭 변경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과
건설 교통국 (6)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도시철도과 차량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 교통국 (7)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도시철도과 차량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정보센터	○ 사업소신설(교통정보센터)
환경 수도국 (6)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수도시설과 수도정수과 하수과	환경 수도국 (6)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수도시설과 수도정수과 하수과	○ 현행
직속 기관 (3)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직속 기관 (3)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 현행